

광주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31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피고1. B

2. C

3. D

4. 주식회사 E

피고 1. 2.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프로치

담당변호사 이동준, 윤상호, 이병호, 황재림

피고 1. 2. 4.의 소송복대리인 F

변론 종결2024. 11. 5.

판결 선고2024. 12. 3.

주 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채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양도일자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이 2021. 7. 12. 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4004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위 법원 I 배당절차에 따라 피고들이 가지는 각 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8. 7. 6.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자재 납품 요청을 받아 합계 52,602,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후, G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9. 4. 2.경 G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차전2540호)을 하였고, G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머13675호)가 진행되었는데,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G 사이에 2019. 8. 19. 52,600,000원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그런데 G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9. 9.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1회차 분할금(17,600,000원)조차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52,602,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1.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G은 2019. 10. 25. 또는 2019. 11. 1. 피고들에게 G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에 대한 J블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등(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함)의 채권 가운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각 양도된 채권의 합계액은 215,053,500원임.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H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들 각자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일 및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일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 B	2019. 11. 01.	45,500,000	2019. 11. 12.	
피고 C	2019. 11. 01.	51,853,000	2019. 11. 12.	
피고 D	2019. 11. 01.	16,000,000	2019. 11. 12.	
피고 (주)E	2019. 10. 25.	101,700,500	2019. 11. 18.	

다. 채무자의 무자력

- 1) G은 2019. 11. 11.경 원고,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다.
- 2) G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의 상태이다.

라.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 H의 공탁 및 배당절차 등

- 1) 원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의 H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의 채권에서 26,698,071(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8428호, 이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함)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1. 25. H에 송달되었다. H은 2019. 12. 4.경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재판부에 "G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약 4억 원, M현장의 공사대금 약 3~4,000만원 등 6개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으나 정산절차 미이행으로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15건의 채권양도통지서, 2건 직불청구서 및 1건의 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23. 12. 28.경 위 사건의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통해 위 진술서를 받았다.
- 2) H은 2021. 7. 12. G의 H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G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32,367,44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4004호로
혼합공탁을 하였고, H의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해당사자들 대상으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에 있다.

피고1(채권양수인)	B	45,500,000	2019. 11. 12.	
피고2(채권양수인)	C	51,853,000	2019. 11. 12.	
피고3(채권양수인)	D	16,000,000	2019. 11. 12.	
피고4(채권양수인)	(주)E	26,829,000	2019. 11. 18.	
74,871,500				
원고(추심권자)	(주)A	26,698,071	2019. 11. 25.	
가압류권자	(주)N	200,000,000	2019. 12. 30.	
	410,000,000	2020. 03. 05.		
가압류권자	O	3,575,000	2020. 01. 13.	
추심권자	(주)K	116,238,264	2020. 03. 16.	
압류권자	(주)L	494,537,019	2020. 03. 23.	
피고4(추심권자)	(주)E	200,000,000	2020. 05. 0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강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행위인 채권양도
사실이 있었음을 알아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채무자 G이 부도에 빠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G이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
G이 동시다발적으로 채권을 양도하여 그 무자력 상태가 더 심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두고도 실제로

집행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며, G이 원고를 상대로 발행하거나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부도났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G의 사해행위나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갑제5, 6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로서는 2023. 12. 28.경 이 사건 진술서를 받기 전까지는 G의 피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일자 이전에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가 P로부터 제기받은 이 법원 2021가단537475 공탁금(H이 이 법원 2021금제3986호로 공탁한 192,903,813원)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소장을 2021. 9. 13. 송달받음으로써 G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나, 위 소송에서 원고는 채권자 Q의 채권양도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소송의 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송달된 증거서류는 P과 피고 E의 채권양도서류,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R과 S 및 O의 가압류 결정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채무자인 G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행위를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G의 사해행위로 보았다거나, 나아가 G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C, E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G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성립되고 발생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G의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G이 채권자들 일부를 선별하여 그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본래 목적은 아닌 점, ② 특히 G이 부도나기 수일 전에 G의 여러 채권자 중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권양도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분행위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되게 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 등 G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B, C, E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들로서는 G의 채무초과상태 및 위 피고들 외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 수량의 일환으로써 G의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고 피고 B, C는 임금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 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제3채무자의 채권자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채무자'를 의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G과 수익자인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수익자인 피고들은 채무자인 G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채승원

별지